수도권 다중이용시설(16종)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

1 적용 지역

○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

2 적용 대상

○ (대상) 다중이용시설 16종(아래 표 참조)

<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>

▲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(시설 허가·신고면적 150㎡ 이상) ▲워터파크 ▲놀이공원 ▲**공연장** ▲영화관 ▲PC방 ▲학원(300인 미만, 교습소 포함) ▲직업훈련기관 ▲스터디카페 ▲오락실 ▲종교시설(교회 제외) ▲실내 결혼식장 ▲목욕탕·사우나 ▲실내체육시설 ▲멀티방·DVD방 ▲장례식장

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3 적용 기간

○ 2020년 10월 12일(월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4 법적 근거

○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**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 및 제2의2호,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* 제83조제2항 및 제4항은 10월 13일부터 시행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**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* 공포(9.29) 3개월 후부터 시행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다중이용시설 16종 집합제한 및 **방역지침 준수 조치**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**집합제한 조치**, 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**방역지침 준수 조치**)

⇩

② (지자체) 관내 **사업장별 집합제한** 및 **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** 실시, **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⇩

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제한 조치	**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**
③ (지자체)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**집합금지명령**)	③ (지자체)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**과태료 부과** (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) * 계도기간 후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
⇩	
④ (지자체)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위반 시 **고발조치**, 확진자 발생시 **손해배상 청구**	④ (지자체)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**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** 명령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에 의한 운영 중단 명령), 확진자 발생시 **손해배상 청구** * 법률 공포(9.29) 3개월 후부터 적용 가능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
○ **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**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시설별 **핵심 방역수칙**을 **모두 준수**(참고)

○ **지자체장의 조치사항**

☞ **추가 행정조치** 및 **안내** → 이행여부 **현장점검** → 위반시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또는 **과태료 부과** → **고발** 또는 **시설 운영 중단**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**집합제한** 및 **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**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·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-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·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**이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실시하거나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대해 **과태료 부과**

* 다만, 과태료 부과는 법률 시행일 및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11월 13일부터 적용
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** 또는 **3개월 이내**의 **운영 중단 명령**

*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

-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참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

□ 실내체육시설, 오락실, 종교시설(교회 제외), 실내 결혼식장, 목욕장업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, 영화관, **공연장**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▸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▸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▸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*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▸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	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▸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▸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*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